

『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3월 3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강승수, 김낙관, 김태근, 송용자,
안주찬, 윤종호, 장미경, 최경동 의원(9인)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3월 16일

제2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 진 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「식물방역법」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 예찰과 방제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병해충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예찰·방제단 설치(안 제1조~제3조)
-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, 임무(안 제4조~제6조)
- 예산지원 및 교육, 예비비, 사무의 위탁(안 제7조~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식품방역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3. 4. ~ 3. 11.)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- 본 「구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은,
 - 기후변화와 재배 작물의 다양화, 국가 간 교역 확대 등으로 외래·돌발 병해충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「식물방역법」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,
 -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산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